#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4697

제안연월일: 2012. 2. 27.

제 안 자:국회운영위원장

#### 1. 제안이유

가. 「국회법」 등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에 "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· 금융위원회 위원장·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·한국은행 총재"를 추가 함에 따라 「인사청문회법」상의 경과보고서 송부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국회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대통령 등에 송부하지 못할 경우, 국회에 경과보고서를 제출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"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· 금융위원회 위원장·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·한국은행 총재"를 추가함(안 제6조제3항).

법률 제 호

#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중 "국가정보원장·국세청장·검찰총장·경찰청장 또는 합동 참모의장"을 "국가정보원장·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·금융위원회 위원장·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·국세청장·검찰총장·경찰청장·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12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행 개 정 안 혂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・② 제6조(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) ①・② (생 략) (현행과 같음)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・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위원・국무위원・방송 통신위원회 위원장・국가정보 -----국가정보 원장 • 국세청장 • 검찰총장 • 경 원장·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· 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(이 금융위원회 위원장·국가인권 하 "헌법재판소재판관등"이 위원회 위원장 • 국세청장 • 검찰 라 한다)의 후보자에 대한 인 총장 · 경찰청장 · 합동참모의장 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 또는 한국은행 총재-----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 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・ 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 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. \_\_\_\_\_\_\_ ④ (생략) ④ (현행과 같음)